

학교시설대수선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

※ 제2면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과 □안은 표기하지 않습니다.

(2쪽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승인번호 □□-□□-□□□□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

건축주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)	

설계자	성명 (서명 또는 인)	면허번호
	사무소명	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)	

건축물 개요	위치 □□-□□□□-□□-□□	
	건축면적 m ²	연면적 m ²
	주용도	부속용도
	구조	층수(지상, 지하)
	공사면적 m ²	

대수선 내용	1. 내력벽의 벽면적 ()m ² 를 해체하여 (수선·변경)한다. 2. 기둥 ()개를 해체하여 (수선·변경)한다. 3. 보 ()개를 해체하여 (수선·변경)한다. 4. 지붕틀 ()개를 해체하여 (수선·변경)한다. 5. (방화벽, 방화구획)을 위한 ()바닥 ()벽을 해체하여 (수선·변경)한다. 6. (주계단·피난계단·특별계단)을 해체하여 (수선·변경)한다. 7.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(외부형태·색채·담장)을 변경한다. 8. 기타 :
-----------	---

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시설 대수선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교육감 · 교육장 귀하

첨부서류	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승인서

승인 제 호

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(교육감 · 교육장)

(서명 또는 인)

대수선승인 신청안내			
제출하는 곳		처리부서	
수수료		처리기간	7일
근거법령	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		

유의사항

1. 건축물개요는 “건축물 대장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2. 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, 기둥 3개 이상, 보 3개 이상, 지붕틀 3개 이상,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, 주계단·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·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